

## 【 9 】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7. 6.  
제출자 : 양주시장

### □ 제안이유

- 가.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시 재정의 건전화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 나.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참여예산제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효성 확보 및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가. 법령준수 의무를 정함(안 제3조)
  -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됨
- 나.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함
- 다. 주민의 권리를 정함(안 제5조)
  -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라. 예산참여 시민위원회구성 및 운영 (안 제6~13조)
  - 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해 50명이내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선발 요건을 정함.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운영원칙을 명시하여 시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
- 마. 예산학교 설치 운영 (안 제14조)
  - 주민이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하고, 교육 내용은 예산실무, 각종 소양 교육,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함.
- 바. 주민참여예산제운영 계획 수립을 정함(안 제16조)
  -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사. 의견수렴의 방법을 정함(안 제17조)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
- 아. 결과 공개를 정함(안 제19 조)
  -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양주시 조례 제 호

## 양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시민위원회의 구성은 50명 이내로 한다.

③ 시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1/3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이상,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의회 의원 1인당 1명으로 한다.

1. 시민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로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내에서 주민참여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집약하는 활동
2.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 홍보 활동
3. 보고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예산절감을 위한 연구 활동

**제9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둔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 서기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⑤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등)** ①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안건의 검토결과 등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주소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예산학교)** ①시장은 주민이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학교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예산학교는 시민위원회 위원 및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 내용은 예산실무, 각종 소양 교육,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5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시장은 시민위원회 위원의 수행능력 배양, 직무연수,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수렴의 방법 등)** ①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실 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입 안 자	실·과장	기획감사담당관
	직위·성명	백 윤 기
	담당·팀장	예산담당
	직위·성명	신 대 수
	담당자	김 진 우
성명·전화		820-2067

---

# 참 고 자 료

---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39조】**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46조】**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기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표준안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표준안을 기초로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운영하시기 바람

행 정 자 치 부

## ○○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표준안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특·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단체장의 책무)** 시장(특·광역시장, 도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